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5 - 475호

의 안 명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 결 일 2025. 12. 22.

주 문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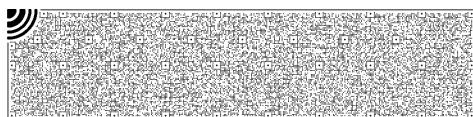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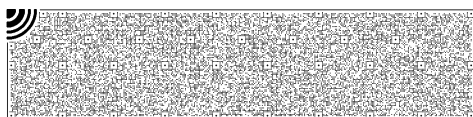
[별 지]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20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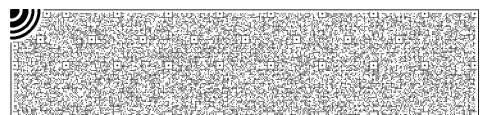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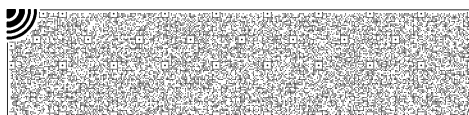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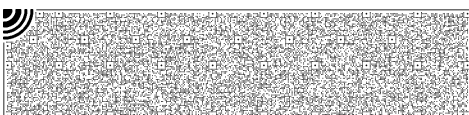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추진배경	1
II. 현황	2
III. 문제점	5
현황	5
문제점	6
IV. 개선방안	7
V. 조치사항 및 기한	7
붙임 1. 관련 법령 등	8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대한민국 위상이 커지면서 다양한 이유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약 700만 명 이상¹⁾이 상시 해외 거주
 - 2종 운전면허는 해외 체류 중에도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갱신 및 재발급이 가능하나,
 -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1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 때문에 해외공관의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 1종 보통 운전면허는 1,839만 6,119명(36.0%), 2종 보통 운전면허는 1,321만 345명(25.8%)으로 대다수 국민이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선호(2023년 경찰청의 ‘운전면허소지자현황’ 기준)

< 해외공관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 보도자료 >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PRESS RELEASE	 경찰청
제13-935 호 배포일시 : 2013. 12. 29.(일) 문 의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공보홍보담당관 권· 심의관(☎:2100-7565),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조· 경감(☎ : 3105-2153)		
전 세계 71개국에서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가능 - 외교부·경찰청 협업으로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서비스 확대 -		
1. 외교부와 경찰청은 재외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2013.5.1일부터 15개 국가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서비스를 12.30(월)부터 총 71개 국가(지역) 소재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동 계기에 서비스 실시 범위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으로 확대		

-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지의 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해외 체류자의 1종 운전면허 갱신 절차 간소화 요청(‘25. 9월 국민제안)
 - 해외 체류 중 2종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을 이용하여 갱신이 가능하나, 1종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국내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한 후 갱신해야 하는 실정임
 -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시 체류 국가의 공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로 적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갱신 절차 간소화 요청

1) 2023년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현황’ 기준

II. 현황

- (개념)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재외 공관에서 운전면허증의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제공
 - 내용 : 갱신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1종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재발급
 - 구비서류 : 신청서,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사진 등
 - ※ 2013년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15개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 71개 국가로 확대(경찰청과 외교부의 MOU에 근거를 두고 추진)
 - ※ 현재까지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기 적성검사 필요의 이유로 서비스에서 제외

<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検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적성검사) 1종 운전면허의 경우, 의무적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기준은 4개 항목(시력, 색채 식별, 청력, 운동 능력)으로 구분됨
 - 시력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색채 식별 : 적색, 녹색, 황색의 세 가지 색 구분 가능 여부
 - 청력 :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 유무
 - 운동 능력 :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유무
 - ※ 정기 적성검사 항목은 병원의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의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갈음 가능

<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 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잔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잔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연기 가능

- 미갱신의 경우, 3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면허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운전면허증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8의2. 생략

-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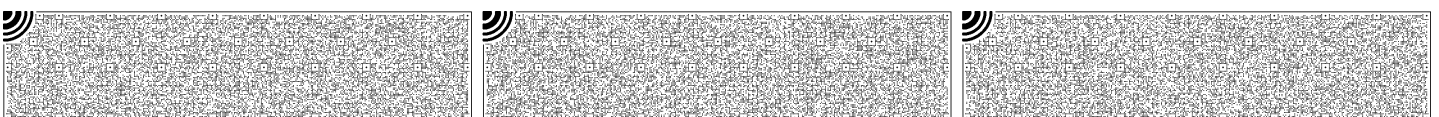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6. 생략

-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Ⅲ. 문제점

현 황

-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3,443만 6,680명('23년 경찰청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기준)으로 단순 통계상 국민의 67.3%가 면허 보유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5,114만 9,546명('25.9월 기준)

- 우리나라 국민은 1종 운전면허(41.0%)를 2종 운전면허(26.3%)보다 더 많이 보유

< 2023년 기준 종별 운전면허 현황²⁾ >

종별	세분류	2023년 기준	인구대비 비율
1종	대형	257만 7,370명	5.0%
	보통	1,839만 6,119명	36.0%
	소형 ³⁾	7명	0.0%
	특수	7,907명	0.0%
	소계	2,098만 1,403명	41.0%
2종	보통	1,321만 345명	25.8%
	소형	1만 4,032명	0.0%
	원자	23만 900명	0.5%
	소계	1,345만 5,277명	26.3%
총계	3,443만 6,680명(67.3%)		

- 다양한 이유로 해외 거주 재외동포는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약 700만 명(재외동포청의 '2023년 재외동포현황' 기준)이 상시 해외 거주

※ 전체 재외동포 중 재외국민은 246만 7,969명, 외국국적동포는 461만 3,541명

2) 동일인이 수종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인해 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와 차이가 있음

3) 1종 소형은 3륜차 생산 중단으로 시험 폐지

< 2023년 기준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2005년	2007년	2009년	2015년	2023년
아시아(일본, 중국 포함)	3,340	3,655	3,249	3,442	2,911
북미(미국, 캐나다 포함)	2,285	2,233	2,326	2,463	2,862
유럽	640	645	656	627	654
기타 지역	371	509	591	654	650
합계	6,638	7,044	6,823	7,185	7,081

※ 재외동포 현황은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 보고한 자료를 취합·정리한 것

문제점

- 재외공관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사각지대 존재
 - 2종 보통 운전면허보다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국민이 더 많음에도 재외공관 서비스는 2종 보통 운전면허에 한정되어 실시
 -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에서 제일 선호되는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기 적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외공관을 통한 갱신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한 대안은 부재

※ 국내의 경우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의사의 진단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외의 경우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부재

- 해외 체류 중 적성검사 기간의 도과 등으로 운전면허증 갱신이 되지 않으면 현지에서 운전 불가 등 생활 불편 초래 우려

※ 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유효기간(Date of expiry)이 표시되어 있어 현지에서 불필요한 오해 발생 가능



IV. 개선방안

- 해외 체류자의 1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대체 수단 마련
 - 1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4개 항목(시력, 색채 식별, 청력, 운동 능력)은 충분히 해외에서도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대체 가능
 - ※ 해당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통해 정기 적성검사 대체 가능
 - ※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일부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71개 국가로 확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에는 일부 해외공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확대 여부 결정 필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반영

현 행	개 선(예시)
▶ 해외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적성 검사 대체 불가	■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 가능

V. 조치사항 및 기한

- ☐ 권고 대상기관 : 경찰청
-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조치사항	소관부처	조치기한
① 1종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대체 수단 마련 ○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의료기관 진단서로 대체	경찰청	'26.12월



붙임

관련 법령 등

□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8의2. 생략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잔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잔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 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제55조(운전면허증 갱신발급 및 정기 적성검사의 연기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정기 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동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2.~6. 생략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해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12월 22일

위 원 장 유 철 환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이 명 순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신 대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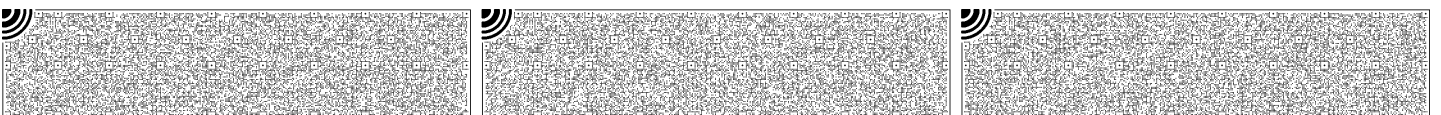
위 원 최 진 영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홍 주

위 원 이 태 한



정 본 입 니 다 .

2025. 12. 22.

국 민 권 익 위 원

